

# LG생활건강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 정 : 16년 3월  
 개 정 : 23년 5월  
 24년 6월

## 목적

01

- LG생활건강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LG생활건강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LG생활건강과 그 계열회사(이하 총칭하여 'LG생활건강')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규범은 협력회사가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노동 및 인권, 환경, 안전 및 보건, 윤리경영, 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에 대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LG생활건강은 국제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본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고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02

- 본 행동규범은 LG생활건강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적용됩니다.
- 모든 협력회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직원과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에 본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 ESG 평가

03

- LG생활건강은 협력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모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협력회사의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규범의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LG생활건강 또는 LG생활건강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LG생활건강은 점검 및 실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리스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LG생활건강의 노력

04

- LG생활건강은 거래계약 체결 시에 본 행동규범을 협력회사에 알리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ESG 컨설팅을 지원하며 본 행동규범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등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LG생활건강은 협력회사 행동강령의 이행을 매년 ESG보고서와 인권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협력회사 또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는 LG생활건강과의 거래 및 계약, 사업운영과정에서 고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채널을 통해 고충사항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조직문화 부문: 02-6924-6676, culture@lghnh.com  
 - 정도경영 부문: 02-6924-6830, justice@lghnh.com

## 가. 노동 및 인권

### 1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자사의 근로자가 채용, 승진, 성과평가 및 보상,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등과 같은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취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단체 가입, 노동조합 가입, 국적, 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 2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누구나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피해 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사례 발생시 피해자보호 및 징계조치 등 관련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3 자발적 취업

협력회사는 강제 노동이나 담보 노동, 착취 노동, 비자발적인 징역자들의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을 쌍방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화장실, 식당 등의 휴게시설, 공장, 기숙사, 외부 의료시설 등의 이동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 4 아동노동 및 임신부 보호

협력회사는 어떠한 직무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동의 기준은 ILO 핵심협약, 고용 승인을 위한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에 따라 15세 미만이나 의무교육 연령을 넘기지 않은 대상으로 정의한다. 만일 지역 법규에서 정한 아동의 나이가 다르다면 낮은 연령이 적용되며, 이러한 최소 근로 연령은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장 내에서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이 발견될 경우,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맞춰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부의 노동 시 야간 및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유해하거나 법령에서 제한하는 위험한 작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각 국가별 비준된 협약에 따라 노동 연령 제한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

### 5 근로시간

근로 일수와 시간은 법규가 정하는 허용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규 근로시간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와 국제 표준 중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다.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며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7일마다 1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된다.

**6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회사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임금, 초과 근로시간, 법정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7 단결의 자유**

협력회사는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단결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부여하고, 대표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보복이나 협박, 불이익, 차별,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

**1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개인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산업 위생**

협력회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지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기술적 또는 행정적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에게 사고위험과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개인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황 보고 및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 화재 감지기 및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비상 대피로 및 유도 등을 부착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위생, 식품, 주거**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나 제3자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환경**

**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 관리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유해물질**

협력회사는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을 사용 및 보관하는 장소, 용기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3 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관련 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폐기물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기오염**

협력회사는 제조공정 운영 시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 파괴 물질, 공정 중 발생한 연소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 취급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 생물다양성/산림파괴/토양(토질) 보호**

협력회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및 토양(토질)을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심각한 숲 황폐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업운영상 생물다양성 저해 및 손실, 산림파괴 및 토양(토질) 오염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여,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수자원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 등 수자원 사용 현황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8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폐수와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은 오염원에서 저감 또는 제거하거나 생산, 정비, 시설 공정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제조 및 포장과정에서 물사용량을 저감하고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제품 함유 물질 규제**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생산, 조달, 유통, 판매하는 원재료나 부품, 제품에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추적 관리해야 한다..
- 10 지속가능제품개발 노력**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지역 정부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 지속가능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라. 윤리경영

### 1 반부패 및 정도경영 준수

협력회사는 LG생활건강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알선, 청탁, 이해상충 행위 등 부패행위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하는 일체의 행위와 약점을 이용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2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회사는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 3 신원 보호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이나 비윤리행위를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채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금지함을 명시해야 한다.

### 4 책임 있는 원자재 구매

협력회사는 유통되는 원자재, 부품, 제품 등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원자재, 부품, 제품 등이 사회환경적 이슈와 관련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5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 보관, 사용, 유출해서는 안 된다.

### 6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7 협력회사의 책임

구매 종합평가 대상 협력회사는 ESG 평가표에 의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의 준수 요구와 이에 대한 평가를 권고한다.